

〈특집Ⅱ : 축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 한우업계 입장

한우산업의 또 다른 위기 환경규제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

한우산업에 있어 분뇨가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다. 타 축산업이 분뇨와 약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우산업은 남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 했다. 양돈과 낙농, 양계산업이 축사를 건축할 부지 확보와 이전 등을 정부에 건의할 때도 한우산업은 사육두수의 증가와 가격 안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한우산업에 있어서도 분뇨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3~4년 전만해도 부산물로 판매가 되던 한우 퇴비(분뇨)는 이제 팔 곳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보조를 확대하면서 경종농가들이 운반, 살포 등이 불편한 한우 퇴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놓고도 공짜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종농가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우 축사의 신축과 이전도 예전만하지 않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에 지침으로 제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으로 인해 축사 신축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시행상의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으로 명시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규제는 한우산업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한우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된 것이다. 환경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축산 분뇨 관리와 축사 신개축 등 막대한 생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생산 비용의 증가가 한우 가격에 전가된다면 한



우 가격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그 비용이 한우가격에 전가될 수 없다면 한우농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한우산업을 끌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과도한 환경규제를 저지하는 것이 전 축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축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고 있다. 한우산업도 이제는 환경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한우 분뇨를 자원화 상품화 하는 등 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수용,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우산업의 부지 관련 법규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

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상수원 보호구역), 4대강 수계관리법(수변구역), 환경영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 등에 의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이란 환경규제를 받는다.

강력한 환경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한우 등 축산농가가 개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규제가 문제된 것은 축산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담은 축사 거리

제한 조치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 현재의 축사부지 관련 법규

- 가. 축사 신축 부지 조사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개발행위 허가와 축사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
- 나. 개발행위 허가 : 축사 건축을 위한 부지 성토, 절토, 정지 및 포장 등을 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 채취, 분할 및 적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단, 농림시역 및 관리시역에서는 3만 m^2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다. 사전환경성 검토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7,500 m^2 , 관리지역은 보전 5,000 m^2 , 생산 7,500 m^2 , 계획 10,000 m^2 이상의 면적을 개발할 경우.
- 라. 축사 및 부속시설인 경우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마. 축사부지 내 축사건축면적 제한(건폐율) : 단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내에 건축이 가능.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지역은 20% 이하, 관리지역 중 계획지역은 40% 이하임.
- 바. 축사의 신고 및 허가 : 축사 신축은 1,000 m^2 이하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개축·대수선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 m^2 이하인 경우 신고로 설치 가능함 (축사관리사인 경우 33 m^2 이하임).

사. 축사 민원에 대한 검토 : 일부 지자체에서 건축인허가시 일정기간 동안 예고하고 인근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

2) 가축분뇨 배설시설의 허가 · 신고 및 기준

한우의 경우 우사의 면적이 일반지역 $900m^2$ 이상(사육두수 75두 이상), 특정지역 $450m^2$ 이상(사육두수 38두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우사의 면적이 일반지역 $100\sim900m^2$ (사육두수 9~75두), 특정지역 $100\sim450m^2$ (사육두수 9~38두)이면 신고대상이다.

허가 및 신고 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내역서가 필요한데 한우의 경우 두당 소요면적은 $12.0m^2/\text{두}$ 가 기준이며, 한우의 배출 원단위는 분 $8.0kg/\text{일}\cdot\text{두}$, 높 $5.7kg/\text{일}\cdot\text{두}$ 가 기준이다. 톱밥(또는 왕겨) 깔짚우사의 경우 우사 $100m^2$ 퇴비사 $13m^3$ 에 해당되는 용적의 퇴비사를 설치해야 한다.

2. 환경부의 환경규제 추진 내용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을 통해, 축사는 5~10가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우는 100m, 젖소는 250m, 돼지·닭·오리는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이를 시군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권고안임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나서 전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업을 위한 신축 개축이 불가능해져 축산농가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전 국토가 축산업 제한구역으로 둑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2)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 관리가 주요 골자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는 종전의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이외에 수변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확대권고안과는 달리 지자체 조례로 추진하되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에 있어서는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및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최종처리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퇴비·액비의 품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단계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밀사육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 지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지만, 수변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 기준 초과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



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가축분뇨법을 입법예고(2012.5.7.~6.16)하고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환경규제 강화의 문제점

환경부의 축산분뇨법 개정 추진 등 환경 규제 강화의 명분은 4대강 수질 및 생활,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와 이를 위한 불법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두고 있다. 즉 주요 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는 가축사육이 곤란하다는 정책의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축산업은 수질오염 등 환경 악화의 주범인양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규제가 곧 축산업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의 요구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축산농가가 모두 범법자가 된다는 점이다. 한우의 경우 건폐율 초과 및

가설 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시설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미신고 축사가 전체 농가의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5만 한우농가 중 7만5천명 이상이 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어 과징금 처분 등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와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를 위해서는 한우산업에 있어 막대한 비용의 추가 부담이 된다. FTA 등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곧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한우농가의 파산을 불러 올 것이다. 한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두이하(74.2%) 영세 농가의 한우 사육 포기는 물론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의 경영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4. 환경규제 대응 방안

1) 축종별 · 사육형태별 축사 건폐율의 조정

한우는 타 축종과 달리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한우 축사의 특성에 기인한다. 건폐율이 20%인 현 건축법상 일반적인 한우 건축은 2동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비

◇ 한우 사육규모별 농가 현황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2012년6월)

구 분	농가수	농가수비율	사육두수	사육두수비율
20두 미만	112,226	74.2	704,267	23.6
20 ~ 50두	24,777	16.4	763,025	25.6
50 ~100두	9,061	6.0	618,134	20.7
100두 이상	5,127	3.4	898,541	30.1
계	151,191	100	2,983,967	100

가림 시설 등을 통해 연결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우는 또한 가축사육 형태별로 분뇨처리방식이 다양하다.

이 같은 한우 사육의 특성을 반영한 축종별·사육형태별 축사기준과 배출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이 조정되어야지만 환경규제도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축산업 허가제를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

축산업은 등록제와 허가제 시행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축산업등록제는 무허가 미신고시설도 가축사육시설로 등재시켜 관리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이후 추진된 축산업 허가제도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제의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방역시설 강화, 배출시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제상의 위치기준 중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을 반영해 나가기로 한 것도 축산업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 및 강화의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규제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 나가야 하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내용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축산업 허가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환경 문제도

이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들에게 방역시설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설개보수를 원하는 농가는 정책적 지원하고, 원하지 않는 농가는 폐업보상비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가 질병방역에 대한 정부 통제력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지만, 한우농가들이 허가제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만드는 것도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3) 한우 퇴비의 상품화 및 유통체계 구축

가축분뇨의 문제는 자원화로 해결해야 한다. 한우 분뇨를 퇴비화하면 분뇨의 악취와 수분이 감소하여 취급이 용이하며, 분뇨 중에 포함된 잡초종자, 병원균 등이 사멸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우수한 퇴비인 한우 분뇨는 조사료 생산과 경종농가 지원에 사용되어 왔을 뿐 부산물 비료로 상품화 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한우 사육시설의 대부분이 톱밥 깔집군사식 우사형태이며 퇴비사가 갖춰졌음에도 한우 퇴비는 오히려 한우농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우 퇴비의 우수성을 살린 비료제조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우 퇴비가 도시농업 원예용 비료 등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